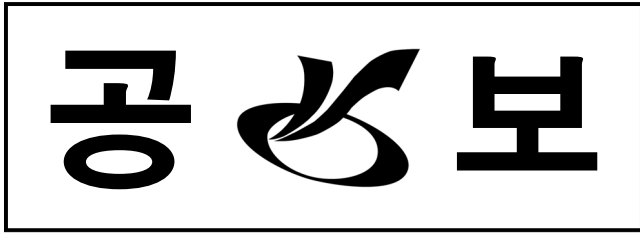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573호

2007년 4월 9일 월요일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1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04호 대곡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입법예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127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9호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3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20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3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16호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4월 4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가. 도 로

구분	시설명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사용 형태	시점	종점	비고
	도로	소로	3	28	6~8	277	일반 도로	대2-61 호선	백석동 80-15	국지 도로

※ 도로 폭원 및 연장 등은 변경없음

##### 나.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3-28	소로3-28 (변경없음)	일부선형변경	시점부분에 대한 일부 선형조정에 따른 변경

#### 2. 지형도면 : 따로붙임(게제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04호

**대곡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대곡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우리구 도시개발과(전화:032-560-4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가. 구역명칭 : 대곡도시개발구역(가칭)
- 나. 위 치 : 서구 대곡동 519-1번지 일원
- 다. 면 적 : 352,498㎡(약106,631평)
- 라.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로부터 5년
- 마. 관계서류 : 별첨 게재생략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행예정자 : 엠엔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수성의 1개사
- 나. 시행 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도시개발과(전화:032-560-477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0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징수되는 수수료를 정비(삭제)하고, 각종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도모 및 행정의 신뢰성을 드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감증명법」 제15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 인감의 개인신고 발급 수수료를 각각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 「병역법시행령」 제167조 수수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2001. 7. 20)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 행정자치부예규 제56호 개정 의거(2000. 8. 21)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은 거주하는 가구수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항목으로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 「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의거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 「공연법」 제39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거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포함)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의거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항목은 삭제하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및 차고지설치확인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낚시어선업법」 제4조,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어업허가(유예·변경)신고,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어업권 분할(변경)인가,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낚시어선업 신고 및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24(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우편번호 404-701
- 전화 : 032-560-4962
- 팩스 : 032-560-4159
- 이메일 : [jaemoo4962@incheon.go.kr](mailto:jaemoo4962@incheon.go.kr)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로 한다.

[별표1] 의 제증명등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제 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증 명〉		
<b>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b>		
(1) 공장등록증명	1통	3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원
<b>2.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b>		
(1) 환지(예정지)증명	1통	4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	1필지	1,000원
(나) 칼라발급 또는 별도도면 첨부인 경우	1필지	1,500원
<b>3. 지방세에 관한 증명</b>		
(1)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건	8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3) 징수유예증명	1통	300원
<b>4. 회계에 관한 증명</b>		
(1)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	300원
(2) 선급금정산확인원	1통	300원
(3)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300원
<b>5. 기타제증명등</b>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4)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b>1. 일반행정관계</b>		
(1)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계속 3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	600원
(3)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원
<b>2. 보건사회관계</b>		
(1)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3)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20,000원
(4)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명칭,구조,이전)	1건	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2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치과기공소 인정, 이전신청 및 양수신고	1건	10,000원
<b>3. 문화공보관계</b>		
(1) 유통관련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2) 유통관련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3) 유통관련업(복합유통·제공업)신고	1건	20,000원
(4) 유통관련업(복합유통·제공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6)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30,000원
(7)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	1건	15,000원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원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10)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11) 공연장 변경등록	1건	20,000원
(12) 영화상영관 등록	1건	30,000원
(1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b>4. 부동산중개업관계</b>		
(1) 법인인 중개업자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6,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8,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b>5. 석유판매업관계</b>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b>6. 수산업관계</b>		
(1) 연안어업 허가	1건	8,000원
(2) 구획어업 허가	1건	10,000원
(3)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5,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5,0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800원
(6)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2,200원
(7)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8) 내수면어업 면허	1건	20,000원
(9) 내수면어업 허가	1건	20,000원
(10)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1건	6,000원
(11) 어업권 분할인가	1건	6,000원
(12) 어업권 변경인가	1건	6,000원
(13)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1건	9,000원
(14)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0원
<b>7. 교통행정관계</b>		
(1)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5,0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1대	5,0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1대	5,000원
(4)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1대	5,000원
(5) 차고지설치확인서	1건	6,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1】 제 증명 등 수수료</b>			<b>【별표1】 제 증명 등 수수료</b>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증 명> 1. <u>인감에 관한 증명</u> (1) 인감증명 (2) 인감의 개인신고 2. <u>병적에 관한 증명</u> (1) 병적증명 3. <u>신상에 관한 증명</u> (1) 부양사실증명 4. <u>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u> (1) (생 략) (2) <u>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u> <u>사실증명</u> · 가소요량 · 확정소요량 (3) (생 략) 5. <u>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u> (1) ~ (2) (생 략) 6. <u>지방세에 관한 증명</u> (1) ~ (3) (생 략) 7. <u>회계에 관한 증명</u> (1) ~ (3) (생 략) 8. <u>기타제증명등</u> (1) ~ (3) (생 략) (4) <u>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u> <u>&lt; 신 설 &gt;</u>			<증 명> <u>&lt; 삭 제 &gt;</u> <u>&lt; 삭 제 &gt;</u> <u>&lt; 삭 제 &gt;</u> <u>&lt; 삭 제 &gt;</u> <u>&lt; 삭 제 &gt;</u> <u>&lt; 삭 제 &gt;</u> 1. <u>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u> (1) (현행과 같음) <u>&lt; 삭 제 &gt;</u> <u>&lt; 삭 제 &gt;</u> (2) (중전의 (3)과 같음) 2. <u>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u> (1) ~ (2) (현행과 같음) 3. <u>지방세에 관한 증명</u> (1) ~ (3) (현행과 같음) 4. <u>회계에 관한 증명</u> (1) ~ (3) (현행과 같음) 5. <u>기타제증명등</u> (1) ~ (3) (현행과 같음) <u>&lt; 삭 제 &gt;</u> (4) <u>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u> 1건     1,000원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생략) (2) <u>전기요금강역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u> (3) (생략) (4) (생략) 2. 건설관계 (1) <u>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신청</u> 3. 보건사회관계 (1) ~ (5) (생략) <신설> (6) (생략) 4. 문화공보관계 (1) ~ (9) (생략) <신설> 5. 부동산중개업관계 (1) ~ (2) (생략) 6. 석유판매업관계 (1) ~ (2) (생략) <신설>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현행과 같음) <삭제> (2) (종전의 (3)과 같음) (3) (종전의 (4)과 같음) <삭제> <삭제> 2. 보건사회관계 (1) ~ (5) (현행과 같음) (6) <u>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u> 1건 10,000원 (7) (종전의 (6)과 같음) 3. 문화공보관계 (1) ~ (9) (현행과 같음) (10) <u>공연장 등록</u> 1건 20,000원 (11) <u>공연장 변경등록</u> 1건 20,000원 (12) <u>영화상영관 등록</u> 1건 30,000원 (13) <u>영화상영관 변경등록</u> 1건 30,000원 4. 부동산중개업관계 (1) ~ (2) (현행과 같음) 5. 석유판매업관계 (1) ~ (2) (현행과 같음) 6. 수산업관계 (1) <u>연안어업 허가</u> 1건 8,000원 (2) <u>구획어업 허가</u> 1건 10,000원 (3) <u>어획물 운반업 등록</u> 1건 5,500원 (4) <u>어업허가 유예신청</u> 1건 5,000원 (5) <u>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u> 1건 2,800원 (6) <u>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u> 1건 2,200원		

	구 분	기준	요액
	(7) 어업허가증(신고필증)	1건	3,000원
	<u>재교부신청</u>		
	(8) 내수면어업 면허	1건	20,000원
	(9) 내수면어업 허가	1건	20,000원
	(10) 어업권(지분)이전인가	1건	6,000원
	(11) 어업권 분할인가	1건	6,000원
	(12) 어업권 변경인가	1건	6,000원
	(13) 관리선사용의지정	1건	9,000원
	<u>(어선사용승인)</u>		
	(14)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0원
	7. <u>교통행정관계</u>		
	(1)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1대	5,000원
	<u>반환신고</u>		
	(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1대	5,000원
	<u>(신규변경)신고</u>		
	(3)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	1대	5,000원
	<u>운송허가</u>		
	(4)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	1대	5,000원
	<u>허가</u>		
	(5) 차고시설치확인서	1건	6,000원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취지**

-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지하수 원수사용료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구성 목적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주체, 세입과 세출내용 등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산정방법, 납입절차 및 가산금 등
- 과태료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3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00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하“부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지하수업무담당팀장은 간사를, 지하수업무담당은 서기 업무를 맡는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기타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기타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이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 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 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 17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 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채납과태료금액	금원 (₩ )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2000년 00월 00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00년 00월 0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5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27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 [도로명:중2-127호선 사업명:검단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 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0) 및 건설과(560-45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4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공고내용

##### 가.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

구 분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	비 고
사업의 시행지	○시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164번지 ○종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44번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명 칭 : 중로 2류 127호선 ○규 모 : L=414m, B=15m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 2007. 7. ○준공예정일 : 2007. 1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별첨 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	“별첨 참조”	

편 입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서구

번호	동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관리내용	비고
			공부	실제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1	오류동	410-164	임	창	9,011	358	338	20	8,653	김흥도	남동구 만수동1014시영01페트 103동 405호				
2	"	410-502	제	도	9	9	9		-	이관식	인천 서구 기전3동 192-7 세우이파트C동 205호	중신기업은 행감단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근저당	
3	"	410-501	도	도	10	10	1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4	"	410-478	제	도	10	10	1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5	"	410-477	제	도	38	38	38		-	추완주	용인시 풍덕천동1018 신정마을 301동1303호				
6	"	410-142	대	대	1,221	12		12	1,209	추완주	용인시 풍덕천동1018 신정마을 301동1303호				
7	"	410-490	제	도	76	76	76		-	이삼남	서울 은평구 신사동362 청운제일01페트 305호	우리은행 육련동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기203번지	근저당	
8	"	410-141	대	대	1,138	30		30	1,108	이삼남	서울 은평구 신사동362 청운제일01페트 305호	우리은행 육련동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기203번지	근저당	
9	"	410-493	제	도	9	9	9		-	국	인천광역시 서구				



22	"	410-167	대	대	590	77	77			513	한남수	인천 서구 오류동 395-98	김단봉형지점오양지점	인천 서구 미전동697-50	근저당
23	"	410-657	대	도	10	2		2		8	한남수	인천 서구 오류동 395-98			
24	"	410-208	임	창	407	384	384			23	김낙중	395-90			
25	"	410-658	임	창	494	9		9		485	김낙중	395-90			
26	"	410-44	도	도	12,672	433	433			12,239	국	인천광역시			
27	"	미지번			4,776	4,776	4,535	241		-					

## 지 장 물 집 계 표

조사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용 도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시	구	동				전체	면적	단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인천	서구	오류	410-164	창고	목재, 스테이트	55	22	m <sup>2</sup>	김흥도	인천시 남동구 민수동 1014 시영01파트103동405호
					지붕	목재, 스테이트	103.5	21.8	m <sup>2</sup>	"	"
					창고	목재, 스테이트	60	10.8	m <sup>2</sup>	"	"
					개사육장	철재	25.6	25.6	m <sup>2</sup>	"	"
					출입문	철재	8.8	8.8	m	"	"
					담장	철재	8	8	m	"	"
					담장	철재	36	15	m	"	"
2	인천	서구	오류	410-477	담장	철재	17	17	m	추연주	용인시 풍덕천동 1018 신정마을 301동 1303호
					면벽	콘크리트	20	2.3	m	"	"
3	인천	서구	오류	410-490	담장	철재	35	35	m	이삼남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62 청운제일01파트 305호
4	인천	서구	오류	410-137	담장	철재	25	4	m	김순화	부천시 소사구 삼곡본동 628-5
					담장	철재	50	3	m	"	"
5	인천	서구	오류	미지번	옹벽	콘크리트	15.2	15.2	m		
					담장	철재	20	20	m		
6	인천	서구	오류	410-167	담장	목재, 스테이트	8.8	8.8	m <sup>2</sup>	한남수	인천시 서구 오류동 395-98
7	인천	서구	오류	410-208	담장	철재	87.5	13.5	m	김낙중	인천시 서구 오류동 395-9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9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대부업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 영업소를 방문하여 소재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6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7. 4. 9 ~ 5. 8 (30일)
3. **송달대상**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주 소
인천서구 06-16	G.M 컨설팅	고기완	인천 서구 가정동 200 외2필지 중앙아파트상가동 3층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5-5 신화연립 바-301

## 4. 송달내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20호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I. 공고내용

1. 정비사업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명칭 : 신현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3. 사업주체 : 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옥삼
4.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번지의 3필지(264-5, 273-9, 273-10)
  - 나. 대지면적 : 163,872.70㎡
  - 다. 연 면 적 : 565,352.612㎡
  - 라. 사업규모 : 36개동 3,331세대
5. 정비사업 시행기간 : 착공이후 약34개월

#### II.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1.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III. 열람장소

1.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허가과(032-560-4733, FAX 032-560-4719)
2. 서구 신현원창동사무소(032-560-4606, FAX 032-583-208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29호

## 인천광역시서구 사계절썰매장관리 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개정이유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무료 입장 범위 확대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거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사계절썰매장의 활성화 도모 및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함

#### 2.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제정에 따른 사용료 개정
-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무료 입장범위 확대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 개(제)정

####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30(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우편번호 404-701

- 전화 : 032-560-4962, ● 팩스 : 032-560-4159
- 이메일 : [jaemoo4962@incheon.go.kr](mailto:jaemoo4962@incheon.go.kr)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 사계절썰매장관리 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로 한다.

제3조 제1항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를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로 한다.

제5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봉사시간이 500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단, 무료입장권은 발급일로부터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총2회를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000시간이상 자원봉사자는 총4회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직계가족은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경우에 한함)

제6조제1호 “단체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할 수 있다.”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단체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부모와 자녀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족이 동시 입장시 사용료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u>(〈신 설〉)</u>            ② (생략)            제5조(사용료의 면제) (생략)            1. ~ 6. (생략)  <u>〈신 설〉</u></p>	<p>제3조(사용료) ①-----            ----- <u>(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u>7.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봉사시간이 500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단, 무료입장권은 발급일로부터 500시간이상 자원봉사자는 총2회를 6개월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000시간이상 자원봉사자는 총4회를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직계가족은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경우에 한함)</u></p>
<p>제6조(사용료의 감면) (생략)            1. <u>단체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할 수 있다.</u>            2. (생략)            3. (생략)  <u>〈신 설〉</u></p>	<p>제6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u>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단체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할 수 있다.</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u>4. 부모와 자녀 등 4인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족이 동시 입장시 사용료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u></p>